

의안번호	제 45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45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“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
를 “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
로 띄어쓰기 함.

나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37조 → 제42조(안 제1조)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내지 제107조 → 제113조부터 제116조(안 제2조제3항)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108조 → 제117조(안 제2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,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를 “거창군
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
“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13조부터
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108조의
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1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	제명 <u>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~ 2. (생략) 3. <u>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</u> 소속 행정기관장 4. (생략) 5. <u>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</u> 하부행정기관의 장	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</u>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117조에 따른</u> ----- ---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 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3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 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7조 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.